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문혁 의원)

의안 번호	46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03월 14일

발 의 자 장문혁 의원

찬 성 자 이주응, 심현정, 이명순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서 제2조(정의) 부분 “민간위탁” 과 “수탁기관” 정의를 상위법을 근거하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근거로 민간위탁 정의 명확히 함.(안 제2조제1호)
- 나. 기존 수탁기관 정의에서 ‘관내 및 주소요건’ 부분을 삭제(안 제2조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2022. 03. 02. ~ 2022. 03. 11.(9일간), 의견 없음.
- 라. 집행기관 의견수렴 : 2022. 03. 02.~ 2022. 03. 07. 다음 참조.

조례 개정안	제출 의견(행정과)	의회 의견
<p>제2조</p> <p>1. “민간위탁”이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<u>지방공기업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을 말한다)</u> 또는 <u>출자·출연기관(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)</u>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</p>	<p>제2조</p> <p>1. “민간위탁”이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→수정사유 :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1조(목적)의 민간참여 기회확대와 민간위탁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문구임</p>	<p>【수용】</p>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“**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군 소재**”를 “**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**”으로, “**군에 주소를 가진 개인**”을 “**개인**”으로 한다.

1. “**민간위탁**”이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창군수 (이하 “**군수**”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련법령]

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·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장문혁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6